

새정부의 세제개편 방향과 정책과제

- 일시: 2021년 11월 26일 (금)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자유기업원 · 국회의원 윤창현 · 국민노조 · 바른
사회시민회의 · 한국대학생포럼 · 한반도선진화재단

- 사회: 김태기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 발표: 이영환 계명대학교 교수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토론: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

세미나 진행 식순

시 간		내 용
1부 - 개회식		
10:00~10:10	소개	국민의례
		환영사 최승노 / 자유기업원 원장
		개회사 윤창현 / 국회의원(국민의힘)
		내빈소개
2부 - 발제 및 토론 (사회 : 김태기 /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10:10~10:50	발제1	■ 이영환 /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발제2	■ 이성봉 /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0:50~11:10	토론1	■ 원윤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토론2	■ 홍기용 /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1:10~11:40	자유토론	자유토론 및 폐회

[제1 발제]

새정부의 세제개편 방향과 정책과제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새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과 정책과제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I. 문제제기

-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이후 거의 60년간 지속되었던 고도성장시대를 마감하고, 이제는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으로 평가
 - 이에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력의 조속한 확충과 함께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음
 -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신속한 이동을 요구
 - 자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별경제주체들의 경기규칙(the game of rule)을 선진화하는 것이 시급
 - 특히, 일관성도 없고, 후진적이고, 누더기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세제의 기본적인 틀을 선진화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
- 무릇 올바른 처방은 정확한 진단에서 출발
 - 우리 세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리
 - 첫째, 건국 이후 크든 작든 거의 매년 개편되어 경기규칙 자체가 복잡
 - 둘째, 세목 자체가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각 세목마다 과세구간과 세율이 복잡하여 조세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이 심함
 - 셋째, 각 세목마다 비과세·감면 조항들이 너무 많아 과세기반 자체가 협소함
 - 넷째, 그간 진행된 세제개편은 대중요법적이어서 디지털경제에 순응하기 힘들
 - 다섯째, 원칙도 없이 정치권의 무분별한 요구에 의해 단행된 세원배분의 문제로 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방화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일정부분 한계가 있음
- 이상과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현행 세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개편 아니 개혁이 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제가 제대로 개편되지 못한 이유는 세제를 개편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
 - 이유는 세제개편은 어떻게 설계가 되던 모든 개별경제주체들의 후생을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시킬 수 없기 때문
 - 그러므로 성공적인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정치·경제학적으로 많은 난관 극복이 필요

- 아직도 여전한 코로나19로 e-러닝과 원격진료 등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을 둔 비대면(un-tact) 기술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음
 - 구체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이 디지털화로 전환됨에 따라 기술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 또한 '긱 경제(gig economy)'¹⁾와 공유경제 등 새로운 사업모델의 등장 이면에는 저숙련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도 상존
 - 경제·산업 구조의 디지털화라는 근본적인 변화는 정책 환경에도 다양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기존 전략의 전환과 새로운 전략의 발굴이라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

- 여기서는 작금의 코로나19 등 당면한 국난을 극복하고,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선진국 진입을 위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현행의 세제를 조세환경 변화에 맞추어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
 - 세제개편의 기본원칙은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세제 자체의 단순화', '세수 중립적인 세제개편'으로 설정한 뒤 개별세제에 대해 개편보다는 기본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정책과제의 형태로 논의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제개편은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
 - 세제개편의 최적 시기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라고 판단
 - 차기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하여 정권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세제도의 개편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그 이유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물려있는 세제개편은 그 시기를 놓치면,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
 - 그동안 지난 정부들이 추진한 세제개편들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였던 것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사료

1) 임시로 하는 일을 뜻하는 '긱(Gig)'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를 결합한 신조어로 특정한 프로젝트 또는 기간이 정해진 단위업무(task) 수행을 위해 노동력이 유연하게 공급되는 경제 환경을 의미

Ⅱ. 현황 및 문제점

1. 복잡한 조세체계

- 우리의 조세체계는 14개 세목의 국세와 11개 세목의 지방세로 도합 25개의 세목을 조세체계 자체가 매우 복잡
 - 현행처럼 세목 수가 많으면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이 증가
 - 특히,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은 독립된 세원도 없이 부가세(surtax)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처럼 동일한 과세대상에도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조세가 중복적으로 부과
 - 심지어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조세감면액에도 조세가 부과되는 등 실제 운용되고 있는 조세제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
 - 국세와 지방방세 모두 여러 개의 목적세 또는 목적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목들이 있고, 그 비중 또한 상당한 수준
 - 이러한 성격을 가진 세목으로는 국세 중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와 함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목적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20년 현재의 세수기준으로 이러한 세목들의 세수 규모는 국세의 11.0%에 달하고 있음
 - 지방세에서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라는 목적세를 가지고 있고, 지방세 세수 중에서 9.3%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세제는 정책의 명료성, 세무행정의 중복성 배제 등의 시각에서 세목수를 대폭 줄이는 대폭적인 개편을 도모할 필요

2. 디지털경제의 발전과 조세정책

- 디지털 플랫폼의 활성화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경제주체들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지위는 기존과 같은 피고용인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은 기존의 방식으로 소득·거래내역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 현재 과세관청에서 플랫폼 판매자에 대한 소득파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 파악 방법을 준용

- OECD는 『BEPS Action 1』을 통해 디지털경제의 발전에 따라, ① 대부분의 국가에서 면세되는 소액재화의 국제거래가 급속한 증가, ② 소비자에게 직판되는 무형의 재화·서비스의 거래량 증가로 부가가치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
 -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정비용을 이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수입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
 - Copenhagen Economics(2016)²⁾은 유럽 밖에서 유럽으로 우편 등을 통한 재화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준응 비율은 35% 수준인 것으로 추정
 -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효율적인 징수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

-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숙박, 교통수단, 음식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들의 거래는 증가
 -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판매자들은 주로 역내에 있으면서 수익을 창출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
 - 대부분 플랫폼 판매자들은 소비자와 직접거래를 하는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디지털 플랫폼은 대리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
 - 이는 디지털 플랫폼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여할 고용주가 없다는 것을 의미
 - 결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전적으로 플랫폼 판매자 개인에게 귀속
 - 이러한 개인 중 비정기적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만을 창출하는 플랫폼 판매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이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납세의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플랫폼 판매자들의 자발적 신고를 통한 완전한 납세준응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이는 전통적인 방식의 사업자들과의 과세형평성뿐만 아니라 공정경쟁에도 영향을 미침

- 결론적으로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모형이 확산되고, 개인 간의 거래는 증가
 - 이는 과세당국 입장에서 하나의 기업이 아닌 다수의 개인납세자들의 수익 및 거래내역을 파악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게 됨
 - 또한 디지털기술의 발달은 온라인을 통한 국제적 거래의 건수 및 거래규모를 증가시켜 부가가치세 징수에 상당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
 -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액의 국제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2) Basalisco et al.(2016), "E-commerce Imports into Europe: VAT and Customs Treatment."

는 점이 더욱 그러함

3.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

- R&D는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요소
 - 지금까지는 R&D 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각종 보조금 및 조세지원 등이 적용
 - 그러나 최근에는 R&D 촉진 정책수단으로 소요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원 뿐만 아니라, 성과물을 사업화하기 위한 특허출원 등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조세지원도 등장하는 등 다변화되는 추세
-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는 노동·자본·토지 등이 주된 생산요소이었지만, 디지털경제에서는 지식·정보 등이 주된 생산요소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조세지원제도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구체적으로 현행 R&D에 대한 조세지원은 지원 대상기술의 열거주의와 사전 요건심사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등 기술혁신의 속도에 부응하는 데는 일정부분 한계
 - 따라서 지속가능한 기술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존의 물적 투자 중심에서 기술인력 양성 및 무형자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이 필요
-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함께 투자의 패턴도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
 - 최근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R&D 활동을 통한 특허·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이 점차 증가
 - 구체적으로 기업의 전체 순이익 중에서 지식재산권에 의해 창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인 소위 ‘특허박스’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Bradley et al.(2015)는 특허관련 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1%p 인하될 경우, 신규 특허출원은 평균 3%p 증가한다고 주장
 - OECD(2016)은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한 EU 국가의 경우 2011~2015년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가 연평균 10.8% 증가하였으나,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같은 기간 연평균 -8.0%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특허박스’ 제도가 외국기업 투자유치 효과가 있다고 보도

- 우리나라는 현재 R&D 투자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의 실적은 저조한 편으로 평가
 - R&D 투자와 관련된 조세지원은 R&D 활동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특허권 등 기술이전 및 취득에만 일정부분 지원
 - 그러나 이러한 R&D 투자관련 지원대상은 특허권에 한정되어 있고, 중소·중견 기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는 점에서 지원효과는 제한적이고, 그것도 특허권 대여 및 이전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대상으로 규정

- ‘특허박스’ 제도는 지식재산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
 - 또한 ‘특허박스’ 제도는 외국 기술·자본의 특허기반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자국 산업구조의 기술 중심 개편을 일부이지만 지원하는 역할
 - 그러나 ‘특허박스’ 제도 도입국의 낮은 세율 적용이 국가 간 경쟁으로 이어지면 국가 간 조세경쟁을 야기할 수 있음
 - 또한 ‘특허박스’ 제도는 해외투자를 특정지역에 편중시킴으로써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조세회피를 조장할 수도 있음

- 우리나라도 최근 R&D 활동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의 일환으로 ‘특허박스’ 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가 증가
 - 향후 국내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하려면,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반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 지금처럼 지원 대상을 중소·중견 기업으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일반적으로 알려진 ‘특허박스’ 제도의 부정적인 효과는
 - 1) 기존 R&D 지원제도와 중복문제를 들 수 있음³⁾
 - 2) ‘특허박스’ 제도의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될 우려가 있음⁴⁾
 - 3)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⁵⁾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

3) 초보적인 ‘특허박스’ 제도였던 ‘기술이전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한 주요 이유도 중복지원이었음

4)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과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여 시행한 것과 같이 수혜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물론 제도의 확대로 기업들의 지식재산의 사업화가 증가하고, 다국적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된다면, 신규로 소득이 창출되고 그에 따른 추가 세수가 발생하므로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는 완화될 수 있음

-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4차 산업관련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2010년에 신설된 동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 적용기간이 만료될 예정
 - 따라서 적용기간의 연장이 필요
 - 그리고 산업경쟁력은 노동·자본·토지와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에서 인재·스마트 자본·데이터 등으로 점차 고도화
 - 미래 고급 기술인력 양성은 혁신기술에 기반을 둔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의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음
 -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으로 핵심기술 및 신산업을 선도할 R&D 기초 및 고급기술 분야 등 미래 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한 상황
- 미래 기술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핵심기술 분야의 인재육성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둔 국가로 영국을 들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성장률 둔화와 생산성 정체 극복을 목적으로 2017년 및 2018년에 인재육성을 포함한 인공지능 정책(UK, 2017)을 수립한 바 있음
 - 우리나라도 인재육성 정책은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계 협력을 통한 민관 공동정책의 형태로 추진되는 점 등을 참고하여 다각적 관점에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디지털 경제발전과 노동시장의 변화

-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전형적인 고용관계를 벗어나는 노동형태가 증가
 -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으로 상당부분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⁶⁾
 - 따라서 노동시장의 이슈 중 하나는 이러한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의 총량과 구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임
- 디지털경제 발전은 생산성을 제고하여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술발전에 의한 노동의 대체로 고용총량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음

6) 이러한 예상에 대해 이민화(2016)는 저숙련·저임금 근로자는 물론 사무·행정직 등 중간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기술진보는 일자리의 형태를 바꿀 뿐이고 일자리 자체는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뿐만 아니라 고용의 구조측면에서도 단기적으로는 플랫폼 노동과 같은 정형화되지 않은 유형의 고용증가로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근로자가 증가할 수도 있음
- 장기적으로는 고숙련 근로자 중심의 기술진보가 가속화되면, 저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이 하락하거나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수요의 양극화 및 임금격차가 심화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정형화되지 않은 유형의 고용증가와 로봇 등에 의한 일자리 대체는 기존의 조세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

- 한국고용정보원(2019)은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는 약 47만 명~54만 명 정도로 전체 취업자의 약 1.7~2.0%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 약 53.7%는 주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김준영 외(2018)은 2017년 기준 미국의 디지털 중개 노동자수(electronically mediated workers) 규모는 약 161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0%로 추정하고, EU의 경우 조사방법이나 플랫폼 노동의 정의에 따라 2.0~9.9%로 추정
- 이러한 정형화되지 않는 노동의 확산은 소득·과세·사회보험제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 정형화되지 않은 노동형태는 보통 일자리 자체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소득의 안정성이 낮음

- 향후 일부 고숙련 일자리를 제외하고, 중간숙련 일자리까지 플랫폼 노동으로 대체되는 등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대체할 정도로 증가할 경우 일자리의 양극화 및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임시직·시간제 참여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형화되지 않은 일자리 및 경제활동의 증가는 과세기반의 비공식 부문을 확대시켜 세원포착을 어렵게 만들게 됨
- 비록 세원포착이 가능하더라도 과세기준선 이하의 소득자 비중이 높거나, 노동자가 과세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과세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따라서 디지털 경제 진전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형화되지 않은 직업군을 공식적인 과세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한 조세감면 혜택 등 세무 행정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또한, 전통적인 노동의 형태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정형화되지 않은 노동형태 간에 과세상의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행 소득세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

5.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재화·서비스와 자산 등을 부분적 또는 전적으로 디지털화하여 새로운 경제적 실체로 전환
 - 또한 구글, 애플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을 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출현하여 그 경제적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⁷⁾
 - 구체적으로 지난 2020년 국내 거래금액만 약 358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 가상화폐 거래에 국세청은 지난 2018년 1월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가상화폐 관련 최초의 과세를 부과한 바 있음
 - 국세청의 이러한 과세사례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성격(자산) 및 과세방식(기타소득), 비거주자 과세와 관련한 국제조세 문제 등 과세상의 쟁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원화출금액을 부동산 외의 자산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

- 이러한 가상화폐가 등장한 이후 전 세계적인 거래량 증가와 함께 높은 변동성에 따른 경제적 차익의 실현이 목격
 - 이에 따라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원칙의 실현, 유사 자산거래 및 경제적 이익과의 과세상의 형평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의 요청이 증가
 - 아울러 가상화폐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와 투기적 과열의 교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가상화폐 과세의 필요성이 존재

- 새로운 경제적 실체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과세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제적 실체에 대한 법적 성격의 규명이 선행되어야 함
 - 왜냐하면, 가상화폐는 교환가치를 지닌 지불·결제 수단, 상품, 주식 등 금융상품과 유사한 자산 등 다양한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
 - 가상화폐 과세를 둘러싼 주된 쟁점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와 이에 토대를 둔 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판단, 소득유형의 결정과 관련되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과 관련이 있음

7) 우리나라는 세법상 가상화폐의 성격에 대한 규정, 구체적인 과세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2019년 말 국세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코리아의 외국인(비거주자) 회원의 가상화폐 원화 출금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빗썸코리아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빗썸코리아의 원천징수 미납분 약 803억 원을 과세한 바 있음

- 이러한 새로운 경제적 실체의 출현은 기존의 전통적 과세방식 및 세무행정의 유효성에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음
 - 그 이유는 현행 과세방식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재화·서비스의 거래를 중심으로 거래 장소(국내 및 국외), 거래자(판매자와 구매자)의 파악이 명확한 전통적 경제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
 - 따라서 디지털경제 환경의 변화는 이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과세방안의 마련과 전통적 경제와의 과세상의 형평성 확보와 같은 조세정책의 변화를 요구
 - 그러나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경제적 실체에 대해 현행 과세체계를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법적 개념의 규명과 소득유형의 결정, 유사한 경제적 실체와의 과세상의 형평성 등 고려해야 할 이슈가 산재
 -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국제적 과세기준과의 조화와 이중과세 방지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존재

- 따라서 새로운 경제적 실체의 등장에 따른 조세정책 수립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먼저, 국가 내부적으로는 조세의 부과가 해당 기술·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함
 - 또한 전통적 영역과의 과세상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세의 형평성도 유지되어야 함
 -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새로운 경제적 실체에 대한 국제적 과세방안 논의에 부합하는 관점에서 디지털 경제에 대한 조세정책의 수립이 필요

6. 부동산세제의 정상화

- 일반적으로 부동산세제의 국제비교가 어려운 이유는 국가별 입법체계의 차이로 인해 세법 내용의 문언적 차이만으로는 우리나라 세제의 평가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
 - 따라서 거래단계별로 구분한 세금부담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동산세제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

- 취득·양도의 거래단계의 우리나라와 OECD 주요 국가들의 금융 및 자본거래세(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통계는 <표 1>과 같이 정리
 - 우리나라의 금융 및 자본거래세는 2018년을 기준으로 비교대상 국가들 및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GDP 대비 1.89%로 37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20년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

- 또한 201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대폭 강화하면서 2020.8.11.부터 시행된 7.10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1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표 1> 우리나라와 비교대상 국가들의 GDP 대비 금융 및 자본거래에 비중(2010년-2018년)
(단위 : %)

연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OECD평균
2010	0.05	0.57	0.54	0.28	1.60	0.39
2011	0.05	0.53	0.60	0.28	1.69	0.38
2012	0.06	0.52	0.58	0.29	1.52	0.37
2013	0.07	0.65	0.56	0.29	1.38	0.38
2014	0.08	0.76	0.59	0.27	1.54	0.41
2015	0.08	0.72	0.65	0.27	1.88	0.43
2016	0.08	0.80	0.68	0.27	1.80	0.44
2017	0.08	0.83	0.76	0.27	1.81	0.45
2018	0.08	0.78	0.78	0.27	1.89	0.45

주 : 우리나라의 1.89는 OECD 국가 중에서 1위
자료: OECD Stat. "Revenue Statistics-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 <표 1>의 금융 및 자본거래세 중에서 취득단계의 부동산 거래세를⁸⁾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일부 비교대상 국가들을 대상으로 2017년을 기준으로 동(同)거래세를⁹⁾ 비교하면 <표 2>과 같이 역시 우리나라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고, 역시 7·10대책이 시행되는 2020년 이후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표 2> 우리나라와 비교대상 국가들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2017년)
(단위 : %)

영국	프랑스	한국
0.67	0.69	1.13

주 : 2018년 및 2019년에는 각각 1.11% 및 1.06%임.
자료: OECD Stat. "Revenue Statistics-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 보유단계의 우리나라와 비교대상 국가들의 OECD의 부동산 보유세(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통계는 <표 3>와 같이 정리

8) 우리나라는 부동산 관련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인지세가 해당함
9) 국가별 부동산 거래세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1)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KOSIS 국가통계포털 중 "국세통계"와 "지방세통계", 영국의 UK Stamp Tax Statistics 및 프랑스의 OECD Stat("Details of Tax Revenue-France")을 이용해서 추정함

<표 3> 우리나라와 비교대상 국가들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2010년-2018년)

(단위 : %)

연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OECD평균
2010	2.93	3.12	2.51	2.05	0.70	0.98
2011	2.83	3.11	2.54	2.07	0.70	1.00
2012	2.74	3.11	2.63	1.98	0.72	1.04
2013	2.72	3.09	2.71	1.95	0.72	1.06
2014	2.71	3.04	2.72	1.93	0.75	1.09
2015	2.69	3.04	2.75	1.88	0.75	1.09
2016	2.74	3.02	2.80	1.89	0.75	1.09
2017	2.79	3.03	2.79	1.89	0.78	1.08
2018	2.73	3.09	2.66	1.90	0.82	1.07

주 : 우리의 0.82는 OECD 국가 중에서 17위이고, 2019년은 0.93%, 2020년은 1.05%, 2021년은 1.20%로 추정됨

자료: OECD Stat. "Revenue Statistics-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OECD 국가들 중 중간 수준인 GDP 대비 0.82%로 37개 OECD 국가들 중 17위로 나타났음(2021년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10년부터 2017년까지 0.08%p의 증가(0.70%→0.78%)에 그쳤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0.27%p가 증가(0.70%→1.05%)하여 OECD의 평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부동산 보유세의 급격한 증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주택 보유과세의 지속적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주택가격의 상승 추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초과누진세율의 급격한 인상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진 2021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양도단계의 우리나라와 비교대상 국가들의 OECD의 양도소득세(taxes on capital gains of individual) 통계는 <표 4>과 같이 정리
 -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미국을 제외한 비교대상 국가들 및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GDP 대비 0.95%로 37개 OECD 국가들 중 3위로 나타났음
 - 2010년부터 2017년까지 0.20%p 증가(0.62%→0.82%)한 GDP 대비 양도소득세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0.13%p 증가(0.82%→0.95%)하여 증가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 등에 대한 중과세가 시행된 2021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단, OECD 자료에서는 양도소득세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실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동(同)자료에서 “0”으로 조회되는 프랑스 및 일본 등의 경우에는 입력 누락 또는 개인소득세 항목에 합산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同)자료를 바탕으로 한 주택 양도단계 세금부담의 직접적 해석 및 OECD 평균과의 상대적 비교는 신중할 필요

<표 4> 우리나라와 비교대상 국가들의 GDP 대비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중(2010년-2018년)
(단위 : %)

연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OECD평균
2010	0.40	0.16	0	0	0.62	0.08
2011	0.41	0.22	0	0	0.53	0.08
2012	0.65	0.25	0	0	0.52	0.08
2013	0.64	0.22	0	0	0.44	0.08
2014	0.90	0.21	0	0	0.51	0.11
2015	0.96	0.29	0	0	0.72	0.13
2016	0.75	0.35	0	0	0.79	0.14
2017	0.98	0.40	0	0	0.82	0.15
2018	1.02	0.36	0	0	0.95	0.15

주 : 우리의 0.95는 OECD 국가 중에서 3위이고, 2019년은 0.84% 2020년은 0.95%임
자료: OECD Stat. “Revenue Statistics-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 추가적으로 <표 5>와 같이 부동산 관련 세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표 4>의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표 1>의 금융 및 자본거래세와 <표 3>의 부동산 보유세를 합산하면 37개 OECD 국가들 중 6위이고, <표 4>의 양도소득세까지 합산하면 3위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부동산 관련 합산 세금부담도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5> 우리나라와 비교대상 국가들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2010년-2018년)

(단위 : %)

연도	취득 및 보유단계 합계 (금융 및 자본거래세 + 부동산 보유세)						전체 거래단계 (금융 및 자본거래세 + 부동산 보유세 + 양도소득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OECD 평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OECD 평균
2010	2.98	3.69	3.05	2.33	2.30	1.37	3.38	3.85	3.05	2.33	2.92	1.45
2011	2.88	3.64	3.14	2.35	2.39	1.38	3.29	3.86	3.14	2.35	2.92	1.46
2012	2.80	3.63	3.21	2.27	2.24	1.41	3.45	3.88	3.21	2.27	2.76	1.49
2013	2.79	3.74	3.27	2.24	2.10	1.44	3.43	3.96	3.27	2.24	2.54	1.52
2014	2.79	3.80	3.31	2.20	2.29	1.50	3.69	4.01	3.31	2.20	2.80	1.61
2015	2.77	3.76	3.40	2.15	2.63	1.52	3.73	4.05	3.40	2.15	3.35	1.65
2016	2.82	3.82	3.48	2.16	2.55	1.53	3.57	4.17	3.48	2.16	3.34	1.67
2017	2.87	3.86	3.55	2.16	2.59	1.53	3.85	4.26	3.55	2.16	3.41	1.68
2018	2.81	3.87	3.44	2.17	2.71	1.52	3.83	4.23	3.44	2.17	3.66	1.67

주 : 우리의 2.71은 OECD 국가 중에서 6위이고, 2019년은 2.69%, 2020년은 2.94%임
 우리의 3.66은 OECD 국가 중에서 3위이고, 2019년 3.53%, 2020년에는 3.89%임
 자료: OECD Stat. "Revenue Statistics-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주택 거래단계별 세금부담은 취득 및 양도 단계에서는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¹⁰⁾, 보유 단계에서는 평균적 수준인 것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에 모든 거래단계에서 세금부담이 증가했고, 특히 보유단계의 세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
- 이러한 모든 거래단계의 주택 관련 세금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잠재적 매수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주택 보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커지는 것과 함께 양도 의사결정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들을 반영해서 최근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매우 위축되었고,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증여 등의 우회적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양도 단계의 세금부담과 관련해서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강화는 명시적인 세율 인상은 아니지만 교육이나 직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1주택 보유자의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최대 3배까지 증가시켜서 양도소득세의 급증으로 인해 양도 의사결정을 유보시키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주택의 공급이 급감해서 주택 매매거래량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0) 부동산 관련 세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표 4>의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표 1>의 금융 및 자본거래세와 <표 3>의 부동산 보유세를 합산하면 37개 OECD 국가들 중 6위이고, <표 4>의 양도소득세까지 합산하면 3위임

-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현황에¹¹⁾ 의하면 <표 6>와 같이 2021년 상반기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9.9% 감소했고,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18.1% 및 1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가장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아파트의 매매거래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17.5% 감소했고,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29.7% 및 3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6> 주택 매매거래량(2020년 및 2021년의 상반기 비교)

(단위 : 건, %)

		2020년 1-6월	2021년 1-6월	증가율
아파트	서울	48,298	29,399	-39.1
	수도권	237,720	167,220	-29.7
	전국	452,123	373,014	-17.5
전체	서울	88,980	72,843	-18.1
	수도권	339,503	278,340	-18.0
	전국	620,878	559,323	-9.9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 주택매매거래량의 추세를 연도별로 확인하면 <표 7>과 같이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후에 2016년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간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감소했는데, 2020년에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누적된 집값 폭등에 따른 “패닉 바잉” 현상으로 급증했고¹²⁾, 2021년에는 주택가격의 급증으로 인해 거래가 위축되는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해서¹³⁾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1) http://www.kab.co.kr/kab/home/trend/market_trend03.jsp

12) 2021.1.19.자 MK부동산 기사(규제 살얼음판에도 ‘패닉 바잉’...2020년 주택거래 역대 최대)에 의하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도 2020년의 전국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집값 폭등에 전세 대란까지 겹치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다,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수도권은 물론 지방 광역시 등에서도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 결과라고 분석하였음. 또한,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결국 집값 정책 실패가 ‘패닉 바잉’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분석하였음

13) 2021.7.28.자 Fortune KOREA 기사(거래절벽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 의하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가 3개월 넘게 기준점인 100 이상의 수치를 보이며 “매입” 심리가 “매도” 심리를 압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매수급지수가 높아지고, 아파트 가격 역시 치솟자 아파트 거래가 뚝 끊어지는 거래절벽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거래절벽”은 충분히 가격이 높다고 판단해서 거래가 끊기는 현상을 말함

<표 7> 연도별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년 대비 증가율(2012년-2021년)

(단위: 천 건,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 체	서울	83.3	111.9	148.3	221.7	213.0	187.8	171.1	131.4	177.8	72.8
		증가율	34.4	32.5	49.5	-3.9	-11.8	-8.9	-23.2	35.3	-18.1
	수도권	272.0	363.1	462.1	611.8	568.3	504.0	470.7	398.9	642.6	278.3
		증가율	33.5	27.3	32.4	-7.1	-11.3	-6.6	-15.3	61.1	-18.0
	전국	735.4	851.9	1,005.2	1,193.7	1,053.1	947.1	856.2	805.3	1,279.3	559.3
		증가율	15.8	18.0	18.8	-11.8	-10.1	-9.6	-6.0	58.9	-9.9
전 체	서울	44.8	68.7	91.7	131.4	122.6	107.9	96.6	71.7	93.8	29.4
		증가율	53.5	33.5	43.3	-6.7	-12.0	-10.4	-25.8	30.7	-39.1
	수도권	173.8	256.8	325.0	407.2	359.9	312.9	379.4	249.1	441.2	167.2
		증가율	47.8	26.6	25.3	-11.6	-13.0	-5.0	-16.2	77.1	-29.7
	전국	503.6	604.3	709.0	808.5	689.1	611.2	563.5	545.1	934.1	373.0
		증가율	20.0	17.3	14.0	-14.8	-11.3	-7.8	-3.3	71.4	-17.5

주 : 2021년의 매매거래량은 1월-6월의 실적이고,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 추가적으로, 집합건물 증여 건수의 추세를 연도별로 확인하더라도 <표 8>과 같이 2017년까지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에는 급증한 주택 관련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증여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이러한 증여 선호의 분위기는 7.10대책 등의 고강도 과세에 대응한 적극적 조세회피를 위해 2020년 이후에 최대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표 8> 연도별 집합건물 증여 건수 및 전년대비 증가율(2010-2021년)

(단위 : 건,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	6,864	6,435	5,983	5,552	7,264	8,004	8,852	10,090	13,126	11,778	22,772	11,627
	증가율	-6.3%	-7.0	-7.2	30.8	10.2	10.6	14.0	30.1	-10.3	93.3	-21.3
수도권	15,262	14,671	13,836	13,317	16,558	19,170	19,598	21,578	26,682	25,707	46,405	25,971
	증가율	-3.9%	-5.7	-3.8	24.3	15.8	2.2	10.1	23.7	-3.7	80.5	-10.3
전국	28,737	29,109	27,688	26,588	32,518	36,735	36,620	39,226	45,895	45,832	76,384	43,760
	증가율	1.3%	-4.9	-4.0	22.3	13.0	-0.3	7.1	17.0	-0.1	66.7	-3.5

주 : 2021년의 증여 건수는 1월-7월의 실적이고,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data.iros.go.kr)

7. 세무행정의 디지털화

- 국회예산정책처(2020)에 따르면, 조세의 신고·납부 등 납세의무 이행에 소요된 시간이 2017년 기준 글로벌 평균 237시간으로 2004년 대비 84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세 및 각종 기여금 납부횟수 역시 2017년 기준 평균 23.8회로 2004년 대비 10.3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변화는 실시간 온라인 세무신고시스템 활용, 세무회계 소프트웨어 확산 등 소위 ICT 기술진보가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디지털경제의 전환과 함께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실현되고, 디지털 플랫폼에 토대를 둔 개인 간 거래의 증가로 인해 과세대상 거래 및 경제적 이익의 파악이 어려워지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디지털경제 활동의 과세기반 확보와 세무행정 효율화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논의되고 있음
 - 과세신고서류에서 수집한 전통적 세무정보뿐만 아니라 이질적 분야의 시스템과 세무행정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빅 데이터 구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음
 - 그리고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을 활용한 고급분석 기술을 세무행정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과거와 같은 단순한 기계적 처리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OECD(2019e)는 매년 발간하는 세무행정 보고서(Tax Administration)를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와 새로운 사업모델의 출현 등 과세관청은 급격한 조세환경 변화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빅 데이터의 활용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세무행정에 도입하고, 국제적 협력의 강화를 제시한 바 있음
 - 아울러 빅 데이터 등 디지털기술의 활용은 세입기반 확보와 과세당국의 행정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납세자 인식제고의 유도과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는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

- 우리나라는 국세행정 정보화를 위해 지난 1996년 말에 국세통합시스템(TIS)을 개발한 바 있음
 - 동 시스템은 국세분야의 세무행정 전반을 기능별(세적·신고·조사·징수·민원·자료)로 분류한 뒤, 전국의 세무관서를 하나의 전산망으로 통합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것임
 - 이는 세목별 구분이 아닌 기능별 온라인 처리방식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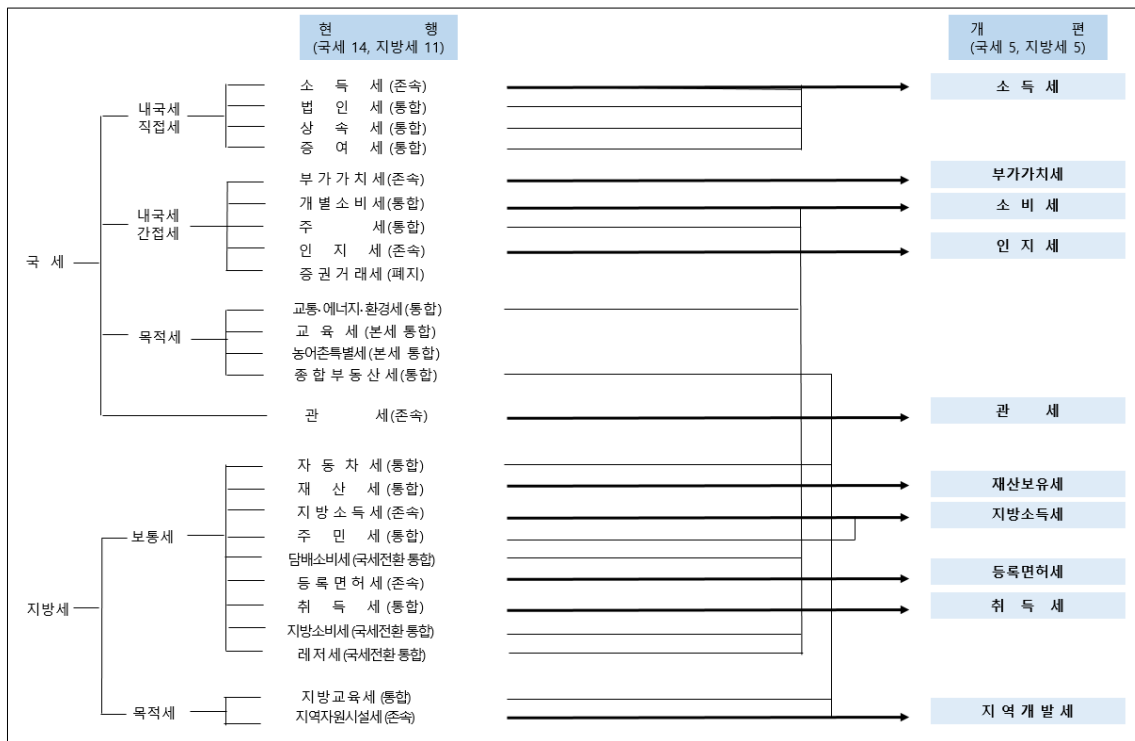
- 물론 1997년 구축 이후 신규 업무 및 세부기능이 추가되면서 국세통합시스템이 복잡화됨에 따라 문제가 되었음
 - 2001~2007년에는 해당 시스템을 웹으로 전환하고 다운사이징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동 시스템이 폐쇄형으로 구축되어 실시간으로 시스템 간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였음
 - 또한 복잡한 국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제한적인 시스템의 한계가 지적되었음
 -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초기 국세통합시스템을 새로운 차세대 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음

Ⅲ. 정책과제

1. 복잡한 조세체계

- 우리의 조세체계는 14개 세목의 국세와 11개 세목의 지방세, 도합 25개의 세목으로 조세 체계 자체가 매우 복잡
 - 세목 자체가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각 세목마다 과세구간과 세율이 복잡하여 조세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이 심함
 - 특히,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은 독립된 세원도 없이 부가세(surtax)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처럼 동일한 과세대상에도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조세가 중복적으로 부과

<그림 1> 조세체계의 전면적 개편(안)



- 조세체계의 명료화 및 간소화
 - 현행 세제는 정책의 명료성, 세무행정의 중복성 배제 등의 시각에서 세목 수를 줄이는 개편을 도모할 필요
 - 구체적으로 국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인지세, 관세 등 5개 세목으로, 지방세는 재산보유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역개발세 등 5개 세목으로 개편

2. 디지털경제의 발전과 조세정책

-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상품(재화 및 용역) 및 사업모델에 대한 과세상의 개념 정의, 소득유형 구분 등 과세상의 어려움 증대
 - 새로운 유형의 경제적 실체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과 함께 전통적 경제와 새로운 디지털경제간 과세상의 형평성 문제 촉발

- 디지털 기업의 성장으로 경제활동 비중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국제적인 세원 이동성 증가
 - 법인세 사각지대와 과세기반 잠식 및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등 과세상의 이슈 야기
 - 디지털 기업의 경우 물리적인 고정사업장 없이도 사업활동이 가능함에 따라 법인세 과세상의 사각지대 발생
 - 저세율 국가로 자산·이익을 이전하고 소비지국에서의 로열티 지급을 통한 과세 회피 행위 증대
 - 과세권 확보 및 이중과세 조정 등 국제적 과세문제 대응 필요성 확대, 국제사회 합의 도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성 제기

- 디지털 플랫폼의 활성화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경제주체들이 증가
 -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주체들의 지위는 기존과 같은 피고용인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은 기존의 방식으로 소득이나 거래의 내역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
 - 플랫폼 활성화에 따른 과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자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이러한 인식은 디지털 플랫폼이 과세당국 보다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많은 디지털 플랫폼들이 추가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
 - 따라서 우리나라도 플랫폼 판매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에 추가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단기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플랫폼 판매자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과세관청과 공유하도록 하는 정보공유협정을 체결하거나, 디지털 플랫폼이 플랫폼 판매자들의 세금을 납부·신고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관련 비용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
 -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플랫폼 판매자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3.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

-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단순·반복적인 노동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첨단혁신기술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지원의 중요성이 증대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은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의 주요 동인
 - 미래 인력수요를 반영한 학습방식 및 직업훈련 고도화 등 인력개발 시스템 재설계와 함께 정부의 R&D 조세지원 관점의 전환을 모색할 시점
- 현행 R&D 조세지원 방식이 궁극적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발하여 혁신성장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효과성 점검이 선행될 필요
 - 제조업 기반으로 설계된 현행 조세지원 방식을 공급자에서 첨단 기술산업 수요자에 초점을 둔 개방적·수평적 지원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
 - 혁신기술의 빠른 변화속도를 감안하여 지원대상 기술의 사전 열거방식을 포괄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대응성을 높이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사전심사를 강화된 사후 성과평가로 대체하는 등 조세지원 효율성 확보 필요
- 새로운 기술혁신의 선도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함에 따라 혁신 생태계 조성 및 민간의 혁신 R&D 촉진을 위한 정부의 조세지원 역할 중요
 - 디지털 경제에서는 주된 생산요소가 정보·지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조업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조세지원제도는 그 효과가 제한적
 - 현행 R&D 조세지원은 지원 대상기술의 열거주의 및 사전 요건심사에 장기가 소요되는 등 기술혁신의 빠른 속도에 부응하는데 한계

4. 디지털 경제발전과 노동시장의 변화

-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Gig 노동자 등 새로운 비정형 노동¹⁴⁾의 출현은 불안전 고용 증가, 비정규직 양산 등 부정적 우려 상존
 - Airbnb, 우버, 배달의 민족 등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을 둔 비정형 노동 출현
 - 맥킨지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Gig 노동자 비율은 미국 18.5% 영국 16.1%로 전망
 - 불안전 고용 증가, 저임금 일자리 양산 등 부정적 우려 상존
 - (Huws et al., 2017)에 따르면, 유럽 7개국의 Gig 노동자 중 임시직 비중은 15~26%로 전체 취업자 중 임시직 비중(2~11%)을 상회
- 비정형 노동자의 등장은 비공식 부문 확대에 따른 세입기반 축소라는 과세문제 제

14) 전통적 고용형태(한 명의 고용주에 기간의 제한 없이 고용된 전일제 근로자)를 벗어난 고용형태(자영업, 임시직, Gig 노동자 등 Non-standard Work)를 의미

기, 공식부문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 필요

- 저숙련 비정형 노동자의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소득신고 인센티브 제공 및 세무신고 간소화 등 공식적인 과세체계 포섭을 위한 대책 마련

□ 자동화에 따른 노동대체는 숙련중심 고용구조 재편을 야기하며, 전통적인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경계가 불분명한 회색지대의 고용형태가 증가

- 회색지대의 고용형태에 속한 고숙련 노동자(자영자)의 경우 고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상당한 담세력 보유

□ 자동화에 따른 노동대체는 숙련중심 고용구조 재편을 야기하며, 전통적인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경계가 불분명한 정형화되지 않은 고용형태가 증가

- 전통적인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경계가 불분명한 정형화되지 않은 고용형태에 속한 고숙련 노동자의 경우 고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상당한 담세력 보유
- 새로운 고용형태의 고숙련 노동자(자영자)와 전통적인 고용형태(근로자)간 과세형평성 확보 필요
- 제도적 차이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새로운 고용형태의 고숙련 노동자는 실제 비용보다 세무상의 높은 수준의 비용공제가 가능함에 따라 전통적 고용형태(근로자)와의 과세상의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 정형화되지 않은 노동자의 등장(자영업자, 임시직, 깃 노동자 등)은 비공식 부문 확대에 따른 세입기반 축소라는 과세문제 제기, 공식부문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 필요
- 저숙련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노동자의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소득신고 인센티브 제공 및 세무신고 간소화 등 공식적인 과세체계 포섭을 위한 대책 마련

□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대체는 고숙련 노동자 중심의 고용구조 재편을 야기함에 따라 임금격차 및 소득분배 악화 우려

- 고숙련 분야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신규 일자리가 창출
- 자동화 대체 위험이 높은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하락으로 임금 격차 확대
- OECD(2019b)는 일자리의 14%가 자동화로 대체, 일자리의 32%는 직무수행방식의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분석

□ 고용형태·소득형태간의 수평적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숙련·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확보 이슈 등장

- 새롭게 등장한 고숙련 노동자와 전통적 고용형태의 노동자(근로자)간의 과세상의 형평성 확보가 중요

<표 9> 노동형태 다양화 및 고숙련 중심 고용구조 재편에 따른 환경변화

원인	환경변화
비정형 노동활동 증가	• 임금 결정방식 및 근로시간 등 노동유연성 증가 • 불안전 고용 증가 등 근로 취약성 확대, 저임금 일자리 양산 • 사회보험가입률 하락 등 사회안전망 취약 가능성 • 과세인프라 한계에 따른 비공식 부문 확대 가능성
기술에 의한 노동대체	• 디지털 기술 확대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 • 고숙련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 중간숙련 일자리의 저숙련 이동, 저숙련 일자리의 자동화 대체 • 일자리 양극화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 • 소득보조정책 필요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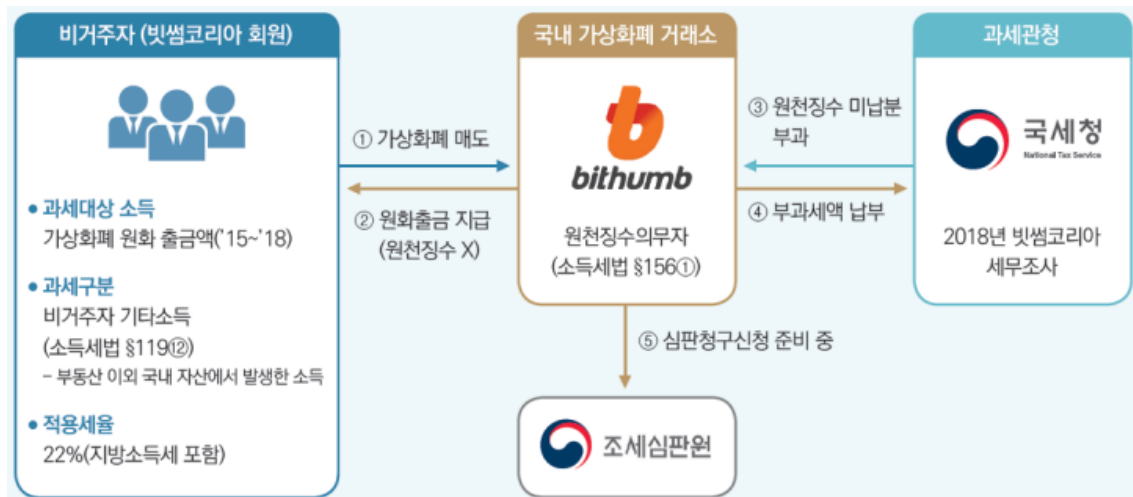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 디지털화된 새로운 경제적 실체의 출현은 재화(유체물)와 용역(무체물)의 구분에 바탕을 둔 전통적 과세방식의 한계 야기
 - 새로운 경제적 실체에 대한 과세는 전통적 경제와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세입 기반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
 - 가상화폐 등장 초기에는 화폐와 자산의 이중성으로 인한 법적성격 규명에 애로
 -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및 미국, 호주, 일본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를 ‘자산(property)’으로 인정, 가상화폐 거래차익을 자본이득으로 과세
- 2019년말 비거주자 회원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원화 출금액에 대한 국내 최초의 가상화폐 과세사례 등장
 - 국세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빗썸코리아)의 비거주자 회원의 원화 출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과세
 -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할 수 없는 상태
 - 비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을 감안하여 포괄주의 방식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을 규정한 점에 근거하여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과세
- 구체적인 과세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세법상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 확립 및 소득유형 구분, 국내 유사 자산간 과세 형평성 확보 필요
 - 우리나라는 올해 중으로 가상화폐 관련 과세방침을 마련할 계획
 - 현재 거주자 가상화폐 거래차익 과세에 대해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 지 여부, 적용세율(누진 또는 비례세율) 판단 등이 쟁점
- 양도소득 과세시 현행 파생상품 등과의 과세상 형평성 확보도 이슈

<그림 2>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사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부동산세제의 정상화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보다는 규제확대 및 비현실적인 조세정책을 통한 수요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특히, 납세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의 강화로 우회적 증여 및 법인 명의의 부동산 거래 등과 같은 조세회피 목적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급증
 - 이같은 비현실적인 부동산 세제로 인해 정책의도와 다르게 자본화효과(capitalization effect)와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결합하여 주택거래의 위축과 함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로 인해 보유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수가 급증하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추세
- 국회예산정책처(2021)에 따르면 2021년 부동산 보유세는 12.0조원 규모로 2019년(6.0조원)의 2배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당초 정책취지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는 상반되는 시장반응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비현실적인 부동산 세제로 인해 정책의도와 다르게 자본화 효과와 동결 효과가 결합해서 주택거래의 위축과 함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추세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세제 운용 시 참고할 수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우리나라의 주택 거래단계별 세금부담은 취득 및 양도 단계에서는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보유 단계에서는 평균적 수준인 것과 함께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에 모든 거래단계에서 세금부담이 증가했고, 특히 보유 단계의 세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현 정부의 출범 이후에 모든 거래단계에서 주택 관련 세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잠재적 매수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주택 보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커지는 것과 함께 양도 의사결정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주택 매매가 크게 위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과중한 세금부담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부담수준으로 인해 과세의 합리성과 함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측면에서도 비판을 제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개편방향은 주택의 거래단계별로 부과되는 과중한 세금부담을 완화시켜서 가격 안정과 함께 거래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할 것임
 - 즉, 취득 및 보유단계의 세금부담의 감소를 통해 자본화효과를 완화시켜서 수요를 회복하도록 하고, 양도단계의 세금부담의 감소를 통해 동결효과를 완화시켜서 공급을 회복하도록 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급격하게 감소한 거래량을 충분히 회복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
 - 단, 취득 및 보유단계의 세금부담의 감소를 통한 자본화효과의 완화(수요 확대)에 비해 양도단계의 세금부담의 감소를 통한 동결효과의 완화(공급 확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 안정 및 거래량 회복의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 가격 인상의 문제점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양도 단계의 세금부담의 감소와 함께 세금부담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시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병행해서 시행함으로써 가격인상의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임
 - 주택의 거래단계별 세금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먼저, 취득 단계의 세금부담은 현행 주택분 취득세 등의 표준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것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자 및 일반지역의 3주택 이상자와 법인에게

표준세율(1%-3%)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부과되는 중과세율(8%-12%)을 최소한 7.10대책의 시행 이전의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음

- 다음으로, 보유 단계의 세금부담은 종합부동산세의 현행 초과누진세율(납세의무자의 유형, 보유주택 수 및 지역에 따라 각각 0.6%-3% 및 1.2%-6%)을 최소한 2018년 이전의 수준으로 인하할(이들 요인들과 무관하게 0.5%-2%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미국의 연방소득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택의 보유 단계의 세금부담을 보유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의 소득공제 또는 처분 시점의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지막으로, 양도 단계의 세금부담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최소한 2021.5.31.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시키고, 비거주 1주택자 및 대다수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성이 있음
- 또한, 2023년의 금융투자소득의 시행에 따라 동일한 자본이익으로 볼 수 있는 주택 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한 단순화한 세율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세무행정의 디지털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무행정은 과세기반 확보를 위한 과세정보 수집, 글로벌 과세권 배분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
 - 자본·노동의 이동성 증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성장, 공유경제·직 노동자 등 새로운 경제활동의 출현은 세무행정 도전 요인에 해당
-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 활용을 통한 세무행정 효율화 가능성 등장
 - 탈세 및 체납 대응에 있어 빅데이터·AI를 활용한 과세행정 정교화, 전산화 시스템을 통한 납세협력비용과 세무행정비용 절감 등 세정 효율화 기회

<표 10> 세무행정 디지털화로 예상되는 환경변화

강점 및 기회	약점 및 위협
• 빅데이터, AI활용 정보접근성 확대 등 과세인프라 확충 • 디지털기술 활용 세정효율화 (과학적 세수예측, 세무조사 대상 선정) • ICT 활용 납세자 인별 서비스 제공 • 납세순응 증가 및 납세협력비용 감소	• 디지털거래 및 비사업자거래 증가 • 이동성·복잡성이 큰 신종거래 등장 • 과세정보수집의 어려움 심화 • 세무검증 등 관리부담 확대 • 개인정보보호 강화 요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디지털 경제의 전환으로 자본과 노동 등의 생산요소들의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 세무행정에 기반을 두고는 세원포착의 어려움이 심화
 - 플랫폼 기업의 성장, 공유경제 및 Gig 노동자 출현 등 새로운 경제활동을 공식적인 과세기반으로 포섭하기 위한 세무행정 중요성 증대
 - 인터넷 망 기반의 새로운 경제활동을 공식적 과세시스템으로 포섭하고, 국제적/개인 간 거래에 대한 징세행정의 정교화 필요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 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을 세무행정 분야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과세기반 확충과 세정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
 - 국제적으로 세무행정 분야의 빅 데이터 활용은 활발한 추세이나, 납세자료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연구목적 자료공개 등 주의할 사항도 존재

[제2 발제]

새정부의 세제개편 방향과 정책과제:
부동산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과제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자유기업원·국회의원윤창현·국민노조·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대학생포럼·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주최

새정부의 세제개편 방향과 정책과제: 부동산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과제

2021.11.26.

이 성 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EU학회 차기회장,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법학회, 한국국제경영학회, 사회적기업학회, 한독경상학회 부회장)

새정부가 추진할 2대 핵심 과제와 세제

1.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 3.3㎡당 서울 아파트 값: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041만 원에서 지난 2021년 5월 3,806만 원으로 86.5% 급등
 - 시장을 무시하고 규제와 과세 중심 부동산 정책이 가져온 실패
 - 세제개편 방향: 공평과세원칙을 지키되, 시장이 작동하도록 개편
2.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 2021년 10월 기준 지난 1년간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 512.4만명 증가", 그런데 "전일제 취업자 수는 1년 동안 444만명 줄어"
 - 기업의 투자욕을 고취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공공 중심의 땀질 처방
 - 세제개편 방향: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활성화 촉진 개편

1.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

주거안정 기여하는 합리적 과세

부동산 트리플 증세 중단과 시장 정상화(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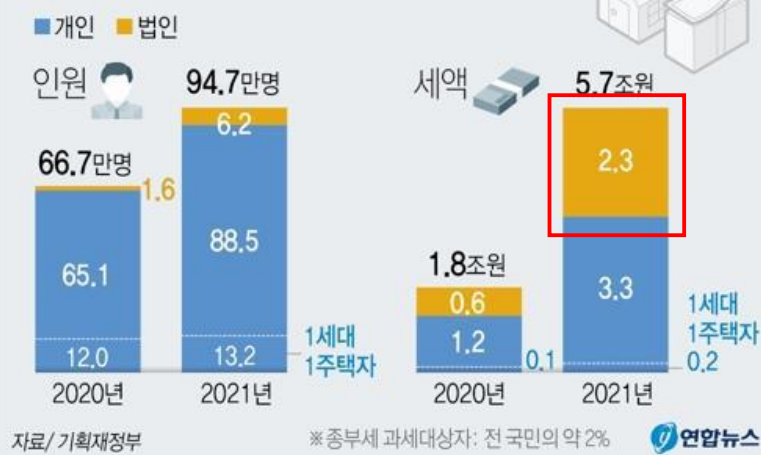
-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동시에 올린 "트리플" 증세의 심각한 부정적 파급효과 차단필요

1. 양도세 중과 완화 추진

- 2020년 7월 - 2021년 6월 다주택자 서울 아파트 매도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7%(11,000건) 감소
-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서울 아파트 증여건수 24,000건으로 다주택자 매도건수 18,806건보다 5000건 많아 -> 부의 대물림만 촉진
- 올해 6월 1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최고세율 75%, 지방세 포함 82.5%)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임 -> 매물잠김과 버티기로 거래절벽 -> 공급 급감 -> 가격 상승의 악순환

-> 양도세 중과 완화로 다주택자 퇴로 제시 -> 매물품림 -> 가격 안정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김영은 기자 / 20211122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자료원: 연합뉴스,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역대급"...분납 신청 늘고 전월세 올릴 듯, 2021.11.22.자
<https://www.mk.co.kr/news/realstate/view/2021/11/1088866/>

임대차법 시행이후 매매·전·월세 평균가 상승률

(단위: %)

	매매가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세가
전국	31.44	31.47	44.38	12.24
서울	27.56	33.50	68.78	9.74
수도권	34.50	36.37	60.42	13.12
지방	28.32	25.00	13.28	12.33

※2020년8월~2021년 9월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자료원: 서울경제, 전세 뛴때 월세 날았다...세입자에 稅부담 떠넘기기 현실화, 2021.11.12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2TZMJO2ZC>

부동산 트리플 증세 중단과 시장 정상화(2)

2.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및 징벌적 성격 제거

- 징벌적 세율: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최저 1.2%(3억원 이하) ~ 최고 6%(94억 이상, 농어촌특별세 20% 가산, 최고 7.2%)
-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1년 68.4% -> 2028년 90%까지 인상
-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이 11억원 초과하지 않아도 2주택 -> 종부세
- 재건축 규제('17년 8.2부동산대책 조합설립 인가 받은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 구입시 입주권 불가이며 현금청산. 이 경우 재건축 입주시점까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불인정)
- 20억 2채 부부 종부세 7천만원 -> 이혼하면 500만원으로 감소
- 2020년 이후 전세 -> 반전세 및 월세 크게 증가(앞의 표 참조)

-> 종부세의 징벌적 세율의 폐지 및 재산세 공제액(현재 약 50%) 확대를 통해서 시장왜곡을 시정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차단

한국경제

PICK ①

[단독] "한국 '종부세 폭탄' 때릴 때, 선진국은 보유세·거래세 낮췄다"

입력 2021.11.25. 오후 3:34 · 수정 2021.11.25. 오후 3:41



좌동욱 기자 >

1,655

822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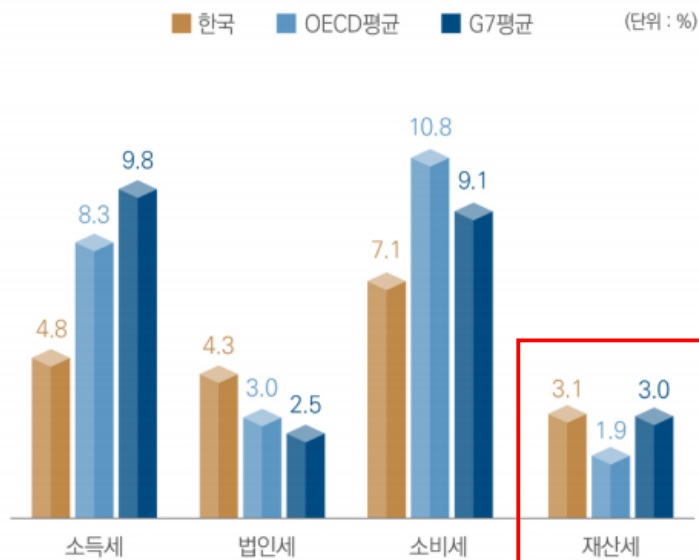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국회 보고서 단독 입수

코로나 위기에 부동산 세금 개편 OECD 10개국 분석
 英 취득세(5%) 면제, 日 기업 재산세 최대 100% 감면
 일자리·소비 증진 목표, 한국처럼 시장안정 정책 없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 관련 세금을 크게 올린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 네덜란드 등 한국처럼 집값이 오른 주요 선진국들은 오히려 개인이나 기업이 내야 할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 코로나 터지자 부동산 세금 낮춰

명목GDP 대비 세수 비중(2019년)



자료원: 국회예산정책처, 2021 조세수첩, 2021

재산과세(재산의 취득, 소유(보유), 거래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 부담 증가는 경제성장을 크게 저해

OECD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1-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과세 부담세율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재산세 담세율 1% 증가는 경제성장률을 직접적으로 0.2% 감소시키고, 재산세 담세율의 정책변수로서 1차효과에 기반한 간접적 GDP 성장을 감소 효과는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김병준, OECD 20개국 재산세의 성장억제효과 분석, 2021년 한국생산성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21.11.19.

2. 기업과세 개편:

좋은 일자리 주역인 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에 기여하는 과세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한국기업의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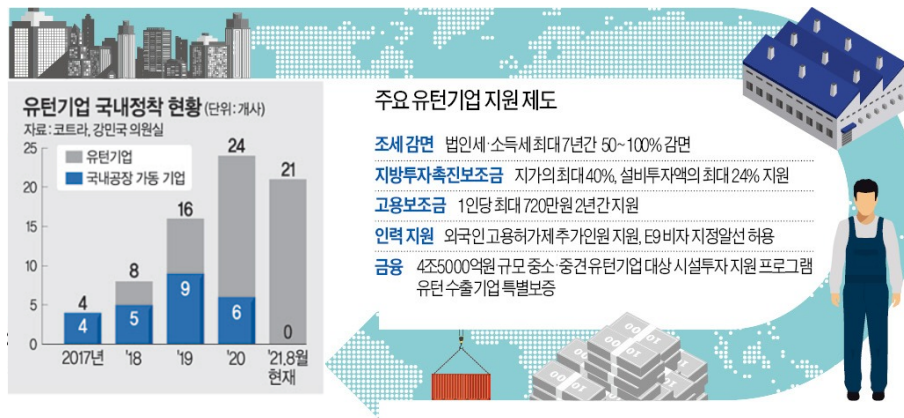
- 한국경제가 직면한 핵심 문제는 글로벌 공급망:
 -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반도체 핵심소재인 불산액,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대 품목)
 -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수요와 글로벌 공급 동시 단절 경험
 - 2021년 10월 15일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발생한 요소수 대란 그 다음은???
 - 한국 경제의 GVC 참여 정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높아,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
 - 해결방안: 한국 투자 입지 및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모든 요인의 발굴과 제거가 필요
- > **현행 기업과세가 한국 기업의 국내투자 및 글로벌기업의 한국 투자를 촉진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하는가?**

한국의 글로벌 투자 입지 경쟁력? 2016년 이후 직접투자 순유출 급속 증가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해외 직접 투자 (한국기업 해외투자)	금액 (억 달러)	295.9	309.3	285.5	303.6	395.9	446.0	497.8	618.5	565.8
	증감률 (전년비%)	0.3	4.5	-7.7	6.3	30.4	12.6	11.6	24.2	-8.5
외국인 직접 투자 (외국기업 한국투자)	금액 (억 달러)	107.1	98.9	122.2	165.8	107.9	135.6	163.9	133.6	110.9
	증감률 (전년비%)	61.3	-7.7	23.6	35.8	-34.9	25.7	20.9	-18.5	-17.0
직접투자 순유출(억 달러)		188.8	210.4	163.3	137.8	288.0	310.4	333.9	484.9	454.9

주: 해외직접투자 송금기준, 외국인직접투자(외국기업의 한국투자) 도착기준.
 자료원: 기획재정부, 해외직접투자통계;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리쇼어링? 유턴지원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성적



자료원: 한국경제신문, 돌아온 기업 80곳 중 절반만 가동 중... "한국은 유턴기업 무덤", 2020년 6월 5일,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0563401>
문화일보, '유턴기업' 8년간 103개뿐... 공장가동도 50곳 그쳐, 2021년 10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01301071903324001>

13

동아일보

PICK ①

韓 조세경쟁력 5년새 17위→26위 '뚝'... 하락폭 OECD 최대

일렉 2021.11.25 오전 9:40 수정 2021.11.25 오전 9:48

254 67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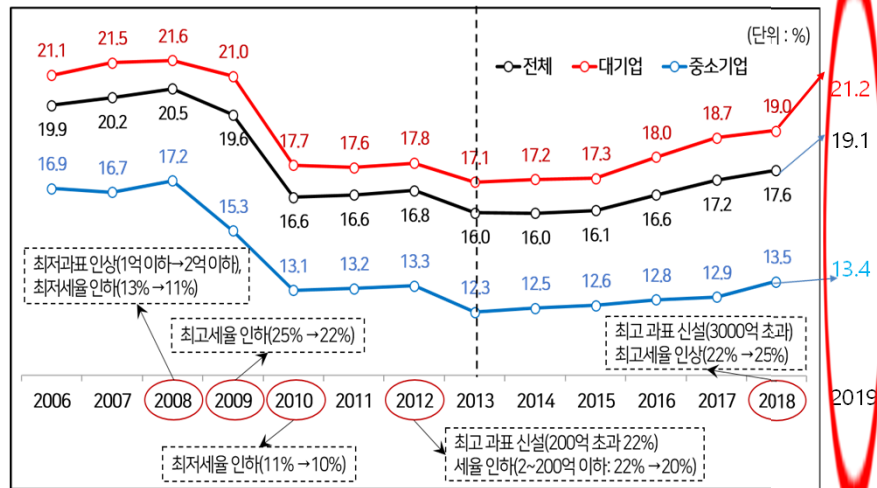
한국은 최근 5년새 세금을 너무 많이 올리고, 과세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조세경쟁력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글로벌 조세경쟁력 보고서(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Report)를 활용해 한국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7개국의 조세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원: 동아일보, 韓 조세경쟁력 5년새 17위→26위 '뚝'... 하락폭 OECD 최대, 2021.11.25.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95879>

14

2018년부터 법인세 실효세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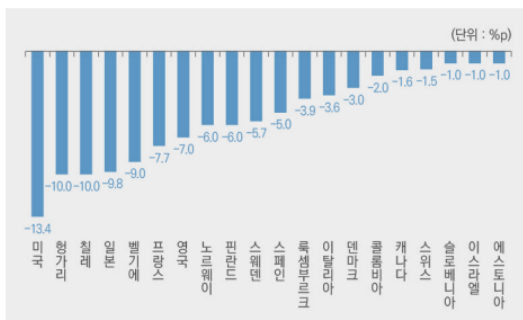


주: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대기업은 중소기업 외의 기업을 의미함. 다만, 중소기업 분류기준 변경으로 '15년 전·후 기업규모별 비교에서 시계열 단층 발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수첩, 각연도('06~'07년은 국세청 국제통계연보를 활용하여 계산)

15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 국제비교 (2011년 대비. 2020년)

▶ 세율 인하 20개국: 미국, 일본, 벨기에, 프랑스, 영국 등



▶ 세율 인상 6개국: 라트비아, 그리스, 한국, 포르투갈 등



주: 지방세 등을 포함한 최고세율 기준 (OECD Tax Database 자료), 나머지 6개국은 현상 유지
자료원: 국회예산정책처, 2021 조세수첩, 2021

법인세율 변화 추이 한국, G7 및 OECD

● 지방세(포함기준: 2021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7.5%는 OECD 국가 중 9위 수준

- 2021년 G7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포함)은 26.7%
OECD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포함)은 22.9%

-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포함): 24.2%('11) → 27.5%('21)
- G7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포함): 32.8%('11) → 26.7%('21)
- OECD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포함): 25.3%('11) → 22.9%('21)

	(단위: %)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순위		변동
												'11	'21	
독일	29.6	29.6	29.6	29.7	29.8	29.8	29.9	29.9	29.9	29.9	29.9	(10)	(5)	5↑
일본	39.5	39.5	37.0	37.0	32.1	30.0	30.0	29.7	29.7	29.7	29.7	(1)	(6)	5↓
프랑스	36.1	36.1	38.0	38.0	38.0	34.4	44.4	34.4	34.4	32.0	28.4	(3)	(7)	4↓
이탈리아	31.4	31.3	31.3	31.3	31.3	31.3	27.8	27.8	27.8	27.8	27.8	(6)	(9)	3↓
한국	24.2	24.2	24.2	24.2	24.2	24.2	24.2	27.5	27.5	27.5	27.5	(22)	(10)	12↑
캐나다	27.7	26.1	26.2	26.2	26.7	26.7	26.7	26.8	26.6	26.2	26.2	(15)	(11)	4↑
미국	39.2	39.1	39.0	39.1	39.0	38.9	38.9	25.8	25.9	25.8	25.8	(2)	(12)	10↓
영국	26.0	24.0	23.0	21.0	20.0	20.0	19.0	19.0	19.0	19.0	19.0	(17)	(30)	13↓
G7평균	32.8	32.2	32.0	31.8	31.0	30.2	31.0	27.6	27.6	27.2	26.7			
OECD평균	25.3	25.2	25.3	25.2	25.1	24.8	24.6	24.0	23.7	23.1	22.9			

주 ()는 OECD 37개국(콜롬비아 포함) 중 법인세가 높은 순위
자료: OECD Tax Database(2021.4.30. 기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법인세율 과표구간

과표 구간수	해당 국가
1개	33개국 호주 ¹⁾ , 오스트리아, 벨기에 ²⁾ , 캐나다 ³⁾ , 칠레,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⁴⁾ ,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⁵⁾ ,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2개	2개국 네덜란드 ⁶⁾ , 프랑스 ⁷⁾
3개	1개국 룩셈부르크 ⁸⁾
4개	1개국 한국

주: 특정소득(체코, 슬로베니아 등), 특정산업(이스라엘, 영국), 특정도시(룩셈부르크),
손실기업(이탈리아), 소규모 법인(호주, 일본) 등에 대한 차등세율은 단일세율로
분류하며, 지방세(Local tax)나 법인세에 부가되는(sur-tax)를 제외한 중앙정부 법인세
기준의 과세표준 구간수임(2020년 기준)

- 1) 호주: 기본세율 30%, 2500만 AUD 미만 소기업 26.0%
- 2) 벨기에: 기본세율 29%에 추가 과세하는 crisis tax 2% 포함시 29.58%
- 3) 캐나다: 연방법인세율은 38%이나 연방법인세 공제·감면 등을 감안한 순 법인세율은
15%, 50만 CAD 이하 소기업의 경우 공제감면으로 인해 9% 세율이 적용
- 4) 일본: 기본세율은 23.4%, 과세소득 800만엔 이하 소기업 15%
- 5) 포르투갈: 기본세율 21%에 부가세(sur-tax)로 과세소득 150만유로/750만
유로/3,500만유로 기준, 0%/3%p/5%p/9%p씩 추가 과세
- 6) 네덜란드: 20만 유로 미만 20%, 20만 유로 이상 25%
- 7) 프랑스: 매출 2억 5000만 유로 미만 28%, 2억 5000만 유로 이상 31%, 납부세액
763만 유로이상인 경우 3.3% 할증되어 32.02%
- 8) 룩셈부르크: 17.5만 유로/17.5-20만 유로/20만 유로 이상 15-17%이며, 20만
유로 이상의 경우 고용기금납입료 포함 18.19%에 지방세 적용으로 24.94% 세율이
적용

자료: OECD Tax Database(2021.4.30. 기준) 및 각 국가의 과세관청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1 조세수첩

제조업 비중 상위 10개 OECD 회원국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아일랜드	한국	체코	슬로베니아	헝가리	독일	일본	슬로바키아	터키	폴란드
제조업 비중('17)	33.9%	29.5%	26.8%	23.7%	23.1%	22.8%	20.8%	20.0%	19.8%	19.3%
법인세율('19)	12.5%	25.0%	19.0%	19.0%	9.0%	15.8%	23.2%	21.0%	22.0%	19.0%
중양정부 중양정부 + 지방세	12.5%	27.5%	19.0%	19.0%	9.0%	29.9%	29.7%	21.0%	22.0%	19.0%

자료원 : OECD, Tax Database; OECD, National Account 2020년 2월 기준

19

법인세 한계실효세율 OECD국가비교

	한계실효세율		순위		변화(%p)
	2005	2014	2005	2014	
France	35.4	36.0	3	1	0.6
U.S.	35.9	35.3	2	2	-0.6
S. Korea	32.8	30.1	6	3	-2.7
Japan	31.5	29.3	7	4	-2.2
Austria	26.2	26.2	10	5	0.0
Spain	30.4	26.0	8	6	-4.4
Australia	25.9	25.9	11	7	0.0
Italy	33.5	24.5	5	8	-9.0
Germany	34.0	24.4	4	9	-9.6
U.K.	30.0	23.7	9	10	-6.3
단순평균	22.3	19.4	-	-	-2.9
가중평균	31.4	28.2	-	-	-3.2

자료: Chen and Mintz(2015), "The 2014 Global Tax Competitiveness Report"의 Table 3에서 재인용.

주: 가중평균은 실질 GDP로 가중된 평균값을 의미함

자료원: 조경업, 법인세 한계세율에 대한 소고, KERI Brief 16-17, 2016. 재인용

20

기업의 한국내 투자 확충을 위한 과세개편 방안

-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 한국의 기업과세체계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해야 함.
 - 국내외 기업 모두 **한국내 혁신적 투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한 기업과세 개편은:
 - 첫째, **법인세율의 직접적 인하** 또는 **투자세액공제 확충** 등 법인세 부담의 **간접적 완화**를 추진
 - 둘째, R&D활동 촉진을 위한 **특허박스제도** 및 **연구·인력개발 조세특례**를 **확충**해야 함.

21

법인세율 인하 방안

-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국내 투자활성화(기존 기업의 신규 투자, 신 산업 생성 및 성장)와 한국 투자매력도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의 인하가 필요
- 국내외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단위당 조세 부담(한계실효세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
-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2019년 OECD 평균 21.7%)로 3%포인트 인하**(2017년 수준 환원)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원부족 대안 실행하며, **장기적으로는 20% 이하 수준으로 인하**

22

투자세액공제 확충으로 투자활성화

- 투자세액공제 등 투자관련 조세특례의 정비를 통한 투자 실효세율 인하도 추진
-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한계실효세율 인하를 유도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 **이월결손금 공제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완화, 공제기한의 연장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

23

2021년 도입 통합투자세액공제 평가

<2020년까지 투자세액공제>

- ① R&D 설비(1/3/7)
 -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 ③ 안전 설비(1/5/10)
 -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 ⑤ 환경보전 시설(3/5/10)
 -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 괄호 :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

<2021년 도입 통합투자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제외)
- (공제방식) 기본공제(당해연도 투자액)
+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2%p 우대**

※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폐지**
('20~'21년 투자분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대기업 1% / 중견 3% / 중소기업 10%**)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 공제율(**모든 기업 3%**)

과거 포지티브 리스트는 기업의 주요 투자 활동의 거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음.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세액공제 투자 범위가 얼마나 확충될 수 있는지 의문임.

결국, 대기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은 크게 낮아지게 되었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연구개발 투자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를 진행할 경우 최대공제율은 기존 14%였던 것이 지금은 기본공제(10%), 추가공제(3%) 및 신성장기술(2%)에 모두 해당해야만 최대 15%가 되어 기존 공제율 수준의 혜택을 받는다고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

좋은 일자리와 연계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 새로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인해서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활용을 통한 법인세 감면 혜택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나마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투자의 욕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투자활성화 강력 견인할 투자세액공제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2-3년 한시적으로 범용적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하여 투자를 활성화하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투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

25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특허박스제도 도입과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특례 확충

- 좋은 일자리는 기업의 과감한 혁신 활동의 결과로 창출됨
- 특허박스제도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 한국 내 국내/외국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로서 혁신기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 R&D투자세액공제와 특허박스제도는 유럽의 대부분 선진국에서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혁신 투자 촉진제도로, 한국도 이를 병행할 경우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고도화 및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26

연구·인력개발 지원특례 확충

-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규모의 확충이 필요**
 - 특히, 대기업의 경우 2013년 3-6% 세액공제율이 2018년부터 0-2%가 적용되어 공제액이 크게 하락
 -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R&D투자에 나서도록 유도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제도의 재도입**
 -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 직면한 기업들이 회임기간이 긴 R&D투자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
 - 과거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제도의 경우 매출액의 3% 범위 내 준비금 적립, 손금인정 이후, 향후 R&D에 사용한 금액을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하는 R&D 활동 담보하는 과세이연제도
 - 현재의 법인세 부담 감소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R&D 추진도 담보할 수 있어 현재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 가능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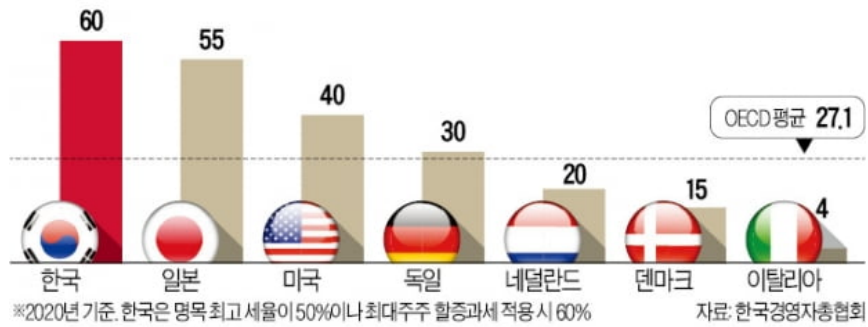
지속가능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과세 개편

-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장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
- 현행 세제는 가업승계공제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높은 상속세율 구조와 까다로운 가업승계요건으로 사실상 한국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독일,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의 기업승계에 대한 지원제도에 비해서 한국의 가업승계지원제도는 극히 미흡하여 한국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 유지에 부족한 상황

28

상속세율 OECD국가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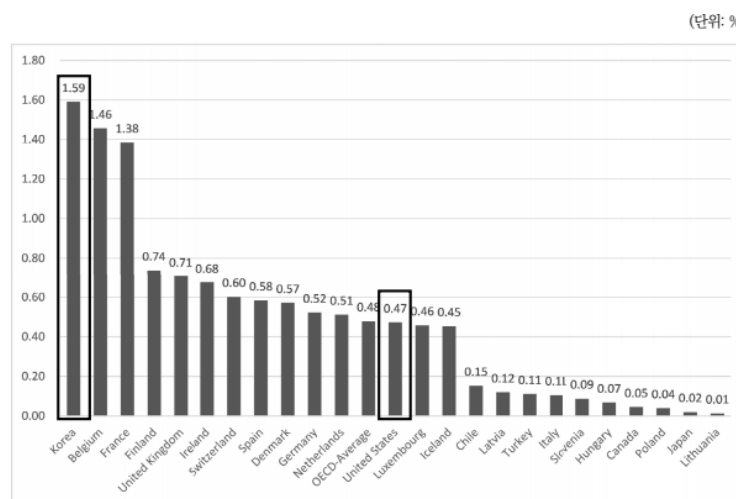
OECD 주요 국가의 직계비속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단위: %)



자료원: 한국경제신문, 韓, 상속세 최고세율 60%...OECD 평균의 두배, 2021년 6월 29일자

29

OECD 회원국 상속증여세/총세수



출처: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검색일자 2021.02.26.

한국세무학회,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기업승계세제 개선, 코협연구보고서 21-02, 2021, p.31 재인용.

30

기업승계공제 활용 한·독 비교

(단위: 건, 금액 독일 1백만 유로/한국 10억 원)

구분	연도	기업승계 상속			기업승계 증여			기업승계 상속 및 증여		
		건수	공제액	건당 공제	건수	공제액	건당 공제	건수	공제금액	건당 공제
독일	2014	10,141	6,439	0.63	10,854	59,586	5.49	20,995	66,025	3.14
	2015	11,085	4,753	0.43	12,921	52,028	4.03	24,006	56,781	2.37
	2016	11,885	5,208	0.44	13,162	53,030	4.03	25,047	58,238	2.33
	2017	10,747	6,881	0.64	10,572	42,062	3.98	21,319	48,943	2.30
	2018	10,311	4,029	0.39	8,909	27,500	3.09	19,220	31,529	1.64
	2019	11,368	3,047	0.27	9,999	20,042	2.00	21,367	23,089	1.08
	평균	10,923	5,060	0.47	11,070	42,375	3.77	21,992	47,434	2.14
한국	2014	68	98	1.44	106	139	1.31	174	237	1.36
	2015	67	170	2.54	76	107	1.41	143	277	1.94
	2016	76	317	4.17	130	201	1.55	206	518	2.51
	2017	91	221	2.43	173	263	1.52	264	484	1.83
	2018	103	234	2.28	204	312	1.53	307	546	1.78
	2019	88	236	2.69	172	238	1.39	260	475	1.83
	평균	82	213	2.59	144	210	1.45	226	423	1.88

자료원: 독일, Statistisches Bundesamt, Finanzen und Steuern, Erbschaft- und Schenkungsteuer, 각 연도; 한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작성

일본의 기업승계 특례조치

	특례조치	일반조치
사전계획수립 등	5년 이내 특례승계계획 제출 (2018년 4월 1일 ~ 2023년 3월 31일)	불필요
적용기한	10년 이내에 상속·증여 (2018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없음
대상주식 수	전체주식(그러나 의결권에 제한이 없는 주식에 한함)	총 주식수의 최대 3분의 2까지 (단, 의결권에 제한이 없는 주식에 한함)
납세 유예 비율	100%	상속 : 80%·증여 : 100%
후계자의 수	3인 이내	1인
고용유지 요건	원칙적으로 승계 후 5년간 평균 80%의 고용 유지가 필요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 등을 기재한 보고서(공인경영혁신지원기관)의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한함을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음으로써 계속 납부가 유예	승계 후 5년간 평균 80%의 고용 유지가 필요
사업의 계속성 관련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제	양도 대가 금액 등에 따라 다시 계산한 유예세액을 납부 종전의 유예 세액과의 차액을 면제	없음 (유예세액을 납부)
상속시 정산과세의 적용	60세 이상 증여자에서 20세 이상의 사람에게 증여	60세 이상 증여자가 20세 이상 추정 상속인 (직계 비속)·손자에게 증여

자료원: <https://isansouzoku-guide.jp/jigyoushoukeizeisei>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기업승계 문제를 구분된 시각에서 접근

- **(대기업) 경영권 방어와 경영권 영속성 제고 차원에서 상속세제 개선 필요**
 -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現 상속세 체계는 기업승계시 상속세재원 마련을 위한 지분매각으로 경영권 상실 우려가 큼.
 - 특히,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 지분을 매각하면 외국계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타깃이 될 수 있음.
 -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우리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상속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체화된 노하우와 기술이전 등 기업승계 차원에서 상속세제 개선 필요**
 - 상속세제 개편을 통해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함으로써 체화된 노하우와 기술 같은 핵심역량을 유지하면서 선대로부터 이어진 장인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장기적 고용 안정, 기술 전수로 기업 성장의 토대를 육성하고 이는 다시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작용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33

감사합니다.

34

[제1 토론]

토론문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토론문

원윤희 (서울시립대)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논의가 필요함

- 두 분 교수님의 좋은 발제문의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함. 그러나 차기 정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재정세제 이슈의 하나는 크게 증가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재정건전성 이슈이며 조세논의에 있어서도 이와 관련하여 전체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조세구조 차원에서 이를 위한 기본방향은 무엇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조세체계의 단순화나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세율인하나 조세지원 확대 등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체 세수를 어떤 세목을 통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 이 방안을 고민함에 있어 주요 OECD 국가들과의 비교 등을 통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모색하여야 할 것임
 -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우 낮은 소득세, 높은 법인세와 재산세의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수확보를 위한 소득세 개편의 고민이 필요함. 더 나아가서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탄소세 등을 고려한 소비세제의 개편도 논의하여야 함
- 이영한 교수님
 - 조세체계의 단순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 등
 - 디지털 경제하에서 플랫폼 기반에서 판매자나 비정형 노동,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등 여러 문제들은 우리가 빠르게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과제
- 이성봉 교수님
 - 좋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나 상속세 세율인하나 조세지원 강화 등

□ 부동산세제

- 문재인 정부의 관점?
 - 현재의 문제는 부동산 투기에서 출발하고 특히 다주택자의 문제
 - 이를 해결하는 것은 투기자에 대한 처벌적 증과세
 - 다주택자 보유물량의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는 불로소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인정 불가
- 상황인식의 변화 필요
 - 다주택자등의 투기적 수요만이 아니라 공급 부족, 그리고 저금리와 양적완화에 따른 유동성 증가 등 거시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
 -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

- 부동산 시장만이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의 자원배분 측면 접근 필요
- 100% 자가보유는 현실의 정책목표가 아니며 다양한 형태의 주거 인정

○ 정책적 모색

-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니라 자본시장,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이것이 건전한 기업들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 이를 위해서는 지배구조, 배당정책, 투자자보호, 상속세제 개편 등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등 여러 정책들이 병행되어야
- 부동산 세제의 법적 안정성 제고 필요
 - . 정책수단으로서의 세제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등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세의 개편에 있어 법적안정성과 형평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 필요하지만 기존의 법적 이익을 크게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반대로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 필요
 - . 지나치게 빈번한, 주택시장 상황에 따른 세제개편은 시장상황이나 정치적 관점에서의 또 다른 개편을 기대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책수단으로서의 세제 효과성을 오히려 약화시킨다고 할 수 있음
- 별척적인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합리화 필요
 - . 지나치게 많은 과세대상과 지나치게 높은 부담수준 및 증가율

□ 조세체계의 단순화와 목적세제

○ 조세체계의 단순화는 세목의 숫자만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과세의 내용이 그대로 있다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소득세로, 주세를 소비세로 통합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지?
- 복잡한 조세구조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구조가 왜곡되어 세부담 구조나 경제적 행태에 왜곡을 초래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등 문제

○ 목적세제의 정비

- 목적세는 법적 또는 실질적인 의미 등 기준에 따라 다양한 구분이 가능한데, 세수를 일정한 목적에 특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철도 등에 부과하는 관세, 수입농수산물에 부과하는 관세 등등 많은 항목들이 있음
- 넓게 본다면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이양되는 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물론 부담금도 준조세로서 목적재원에 해당하는 것임
- 목적세제는 세제의 단순성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과연 그 특정목적에 일정한 세수를 사전에 할당할 필요가 있는지, 목적재원으로 설정할 때의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정비가 필요함

- 그 사전할당의 필요성에서 시급한 검토가 필요한 대표적인 예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라고 할 수 있음
 - .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초중등의 지방교육에 대한 교부금은 내국세의 증가비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재원의 재배분 등이 필요함

□ 법인세 및 상속세 부담 완화

-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일차적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대하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필요
 - 동시에 국가 전체 자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노력도 필요
- 상속세도 그 세수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며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완화노력이 필요함
 - 기업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취하는 제반 합법적 탈법적 조세회피 노력은 실제 세수를 넘어서는 많은 거래비용을 경제에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

[제2 토론]

토론문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새정부의 세제개편방향과 정책과제』 토론문

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 서언

- 현 정부는 조세를 국가과제를 이행하는데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삼았다. 특히 주택가격안정화 등 주택정책에서 조세를 과도하게 활용한 측면이 있다.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 소득세제, 법인세제, 재산세제 등 모든 조세를 핵심 정책수단화 함으로써 조세체계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측면이 있다는 면에서, 향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소득세제의 개편방향과 정책과제

- 우리나라는 2020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지방소득세 포함시 46.2%)에서 45%(지방소득세 포함시 49.5%)로 인상함으로써, 글로벌의 추세와 역행하는 세제를 운영한 바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 현정부가 출범한 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9위에서 13위로 상승했다.
- 소득세의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이하의 낮은 소득계층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은 2009년 이후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정하지 않아 사실상 증세가 되었다. 현행 소득세의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이하 과세표준구간은 2008년에 정해졌고, 동 과세표준구간에 대응한 세율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동일하다. 즉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세율은 8%이고,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의 세율은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6%,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35%로써 12년째 같다. 다만 과세표준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그동안 새로이 4단계의 과세표준구간을 뒤 38~45%의 세율로 각각 과세되고 있으나, 2020년에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했다.

- 1인당 국민소득은 2008년 2만1345달러에 비해 2020년에는 3만1880달러로 약 50% 상승했다. 소득세의 세수도 2013년 48조원에서 2020년 98조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국민의 세부담증가율이 국민소득증가율보다 더 높았다. 향후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혹은 세율을 인하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글로벌 평균에 맞게 3%포인트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과세표준의 구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소득세 최고세율 국제비교
(자료 : OECD, 저자수정)

국가	최고세율(2016)	국가	최고세율(2020)
1 Sweden	57.1	1 Japan	55.9
2 Portugal	56.5	2 Denmark	55.9
3 Japan	55.9	3 France	55.4
4 Denmark	55.8	4 Austria	55.0
5 Austria	55.0	5 Greece	54.0
6 Greece	55.0	6 Canada	53.5
7 France	54.5	7 Portugal	53.0
8 Canada	53.5	8 Belgium	52.9
9 Belgium	53.3	9 Sweden	52.3
10 Netherlands	52.0	10 Finland	51.2
11 Finland	51.6	11 Israel	50.0
12 Israel	50.0	12 Slovenia	50.0
13 Slovenia	50.0	13 Korea	49.5
14 Australia	49.0	14 Netherlands	49.5
15 Italy	48.8	15 Ireland	48.0
16 Ireland	48.0	16 Germany	47.5
17 Germany	47.5	17 Italy	47.2
18 United States	46.3	18 Australia	47.0
19 Korea	46.2	19 Iceland	46.2
20 Iceland	46.2	20 Luxembourg	45.8
21 Spain	45.0	21 United Kingdom	45.0
22 United Kingdom	45.0	22 United States	43.7
23 Luxembourg	43.6	23 Spain	43.5
24 Switzerland	41.7	24 Switzerland	41.7
25 Chile	40.0	25 Turkey	40.8
26 Norway	38.7	26 Norway	38.2
27 Turkey	35.8	27 Chile	35.0
28 Mexico	35.0	28 Mexico	35.0
29 Colombia	33.0	29 Colombia	33.0
30 New Zealand	33.0	30 New Zealand	33.0
31 Poland	32.0	31 Lithuania	32.0
32 Slovak Republic	25.0	32 Poland	32.0
33 Latvia	23.0	33 Latvia	31.4
34 Estonia	20.0	34 Slovak Republic	25.0
35 Czech Republic	15.0	35 Estonia	20.0
36 Hungary	15.0	36 Czech Republic	15.0
37 Lithuania	15.0	37 Hungary	15.0

그림 2 소득세 최고세율 국제비교
(자료 : OECD, 저자수정)

국가	최고세율(2016)	국가	최고세율(2020)
1 Colombia	40.0	1 France	32.0
2 United States	38.9	2 Colombia	32.0
3 France	34.4	3 Portugal	31.5
4 Belgium	34.0	4 Australia	30.0
5 Italy	31.3	5 Costa Rica	30.0
6 Australia	30.0	6 Mexico	30.0
7 Costa Rica	30.0	7 Germany	29.9
8 Mexico	30.0	8 Japan	29.7
9 Japan	30.0	9 New Zealand	28.0
10 Germany	29.8	10 Italy	27.8
11 Portugal	29.5	11 Korea	27.5
12 Luxembourg	29.2	12 Canada	26.2
13 Greece	29.0	13 United States	25.8
14 New Zealand	28.0	14 Austria	25.0
15 Canada	26.7	15 Belgium	25.0
16 Austria	25.0	16 Netherlands	25.0
17 Israel	25.0	17 Spain	25.0
18 Netherlands	25.0	18 Luxembourg	24.9
19 Norway	25.0	19 Greece	24.0
20 Spain	25.0	20 Israel	23.0
21 Korea	24.2	21 Denmark	22.0
22 Chile	24.0	22 Norway	22.0
23 Denmark	22.0	23 Turkey	22.0
24 Slovak Republic	22.0	24 Sweden	21.4
25 Sweden	22.0	25 Switzerland	21.1
26 Switzerland	21.1	26 Slovak Republic	21.0
27 Estonia	20.0	27 Estonia	20.0
28 Finland	20.0	28 Finland	20.0
29 Iceland	20.0	29 Iceland	20.0
30 Turkey	20.0	30 Latvia	20.0
31 United Kingdom	20.0	31 Czech Republic	19.0
32 Czech Republic	19.0	32 Poland	19.0
33 Hungary	19.0	33 Slovenia	19.0
34 Poland	19.0	34 United Kingdom	19.0
35 Slovenia	17.0	35 Lithuania	15.0
36 Lithuania	15.0	36 Ireland	12.5
37 Latvia	15.0	37 Chile	10.0
38 Ireland	12.5	38 Hungary	9.0

□ 법인세제의 개편방향과 정책과제

- 우리나라는 2017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지방소득세 포함시 24.2%)에서 25%(지방소득세 포함시 27.5%)로 인상하는 등 글로벌의 추세와 역행하는 세제를 운영했다.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017년에 현정부가 출범한 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1위에서 11위로 상승했다.
- 법인세의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동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도 2009년에 10%로 정한 후 지금까지 동일하다. 또한 과세표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의 과세표준구간의 세율은 20%로써 2012년 이후 지금까지 동일하다. 다만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했는데, 2017년에는 과세표준 3000억원이 넘으면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였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대부분은 법인세의 경우 단일 과세표준과 세율을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4단계의 과세표준구간으로 세분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법인세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거의 없다는 면에서, 과세표준구간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 법인세제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부자증세 혹은 부자감세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좀더 글로벌기준과 추세에 부합하는 세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의 세율을 15%로 모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최저한세가 7%부터 8%, 9%, 10%, 12%, 17% 등 다단계라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율은 글로벌 평균보다 높게 유지할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글로벌 평균수준인 20%내외로 낮출 필요가 있다.

□ 부동산세제의 개편방향과 정책과제

- 주택세제에서 취득세 최고세율 12%,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특세포함),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는 글로벌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매우 높은 수준의 보유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 부동산의 가격은 주택수요공급정책 등으로 하여야 하지만 세금으로 과도하게 정책수단을 삼고 있다. 공익성을 강조하더라도, 현행 주택관련 세제는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 헌법 35조 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 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주택세제의 추진이 방향성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주택처분을 통한 공급확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주택처분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해 장애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으나 오히려 역행했다. 즉 양도소득세율을 기존에 30%까지 가산하여 최고 82.5%까지 인상하였고, 세입자의 4년거주의 보장을 위해 신규취득자는 전월세 만기 6개월전에 소유권취득을 하는 경우에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주택자가 사실상 부동산처분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 향후 다주택자 등이 주택처분을 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최대 30%)의 적용을 유예하고, 그 처분기간도 4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 세법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주택 등과 같이 거래가 특수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법 후 상당히 시행유예를 주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 내지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개편방향과 정책과제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은 2000년 이후 변동한 적이 전혀 없어, 소득수준의 증가를 감안할 때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인데, 지금까지도 동일하다. 그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약 3배 증가했고, 주택 가격은 10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사실상 증세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인간본성을 벗어나고 채투자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글로벌기준과 추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OECD국가 중 1/3은

상속세가 없고, 이를 포함하여 절반은 10%이하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기업승계 등 이와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개선도 크게 요구된다.

- 1주택자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소득수준과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망하면서 상속하는 경우와 살아서 부가가치세율 10%로 소비하는 경우에, 차등을 줄 하등의 이유는 없다. 이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은 10% 이내로 내릴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정서가 있으므로 점차적 접근이 요구되고, 우선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는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주식 등 기업관련 상속세에서 가산세율(10%)은 조속히 폐지하고, 유산취득세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 부가가치세제의 개편방향과 정책과제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977년 이후 10%로 한번도 변경한 적이 없다. 부가가치세율 10%는 OECD국가의 평균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높다. 그동안 인터넷거래 및 신용카드사용의 증가 등을 통해 국민의 세원투명성은 높아졌고,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늘었다.
- 부가가치세는 향후 국가의 재원확보를 위한 세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금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간접세라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역진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향후 통일이 되는 경우에 소요될 국가재원의 마련을 위한 세원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 결론

- 우리나라의 세제는 현정부에 들어 글로벌기준과 추세에 역행한 측면이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각각 3%포인트씩 인상했고, 부동산세제에서는 외국에서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과도한 세제를 운영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늘리는 효과가 있으며, 국제경쟁력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후생과 국가경제를 감안할 때 개선의 여지가 있다.
- 소득세, 법인세 등의 최고세율을 글로벌의 평균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과도

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통합하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세금중심의 국가주도경제는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는 면에서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통한 국가경제를 힘들게 한다. 향후에는 글로벌기준과 추세를 어긋난 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즉 글로벌 평균을 상회하는 과도한 세율체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면에서 국민의 세금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 한다는 조세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MEMO